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기존 내연기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던 자동차 제원표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원표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되는 자동차 제원표에 맞게 자동차 제원표 작성방법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제원표 작성방법 마련(안 별표5)

기존 내연기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던 자동차 제원표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원표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되는 자동차 제원표에 맞게 원동기별로 구분(내연기

관, 구동전동기, 구동축전지,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시스템)하여 작성란 마련에 따른 작성방법, 자율주행시스템 작성란 추가에 따른 작성방법 등을 정함

나. 자동차 제원표 변경에 따라 자동차안전검사표 및 이륜자동차 실측확인표 수정(안 별지 제4호서식, 안 별지 제4호의2서식)
자동차안전검사표에 제작허용총중량란을 추가하고 자동차 제원표 변경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며, 이륜자동차실측확인표에 원동기별 작성란 마련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4. 17.(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 전화 044-201-3840/3841, 팩스 044-201-55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우편번호 30103)